

##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생산물 배상책임(PL) 보험

1982년 의원입법 형태로 최초 제정논의가 시작된 국내 제조물책임법이 20년만에 드디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과실책임에서 보증책임을 거쳐 엄격책임으로 책임법리를 재구성한 판례법이 확립되어 있으며, 호주, EU 등 세계 선진국은 이미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한 상태이다. 동양권에서는 일본이 1995년, 필리핀 1992년, 중국도 1993년에 우리보다 앞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가입국 중 PL법을 가장 늦게 시행하는 국가가 되는 셈이라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 도입효과, PL보험가입의 효과 및 PL보험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제조물책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원칙을 규정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과거 민법상 제조물의 소비자인 '매수인 책임원칙'이 제조자의 책임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매도인 책임원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제조물의 제조자가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다. 과거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것이 이른바 무과실책임제도'인 것이다.

결국,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배상책임위험이 심화되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95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PL고발 및 상담건수가 이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사례를 비추어 국내에서도 2002년 7월 이후 소비자로부터의 PL Claim 청구사태가 현재보다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제조업체는 PL위험에 대한 별도의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론상 최선의 대비책은 한마디로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기업의 제조물책임대책은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제조물예방대책)과 PLD(Product Liability Defence : 제조물책임방어대책)으로 나누어 지는데, 대기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PL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인적 물적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환경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제조물책임 방어대책(PLD)의 방안으로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 PL보험 가입으로 첫째, 비교적 고정적인 보험료로 위험을 전가하여 경영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며, 둘째, PL관련 Claim처리,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별도의 위험관리조직이 필요없어 경영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셋째, 보험사의 전문적 경험 및 노하우 활용, PLD대책 조언 서비스, Claim처리 Feedback, 지속적인 PL 컨설팅서비스 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PL보험 가입으로 PL Risk의 위험전가 효과와 PL보험사의 부수적 PL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PL Risk 방어조직의 외부 아웃소싱(Out Sourcing)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실례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의 경우 1995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된지 7년만에 이미 80% 이상이 PL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혹은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이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는 크게 PL Claim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피해자와의 화의비용 뿐만 아니라 동 사고의 철기에 따르는 제반 비용인 기타 소송비용 등의 재정적 손실까지 담보한다.

국문 PL보험상품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내수용 생산물을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 영문 PL보험상품인 '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은 내수용 생산물을 포함하여 해외에 판매, 수출되는 경우 사용한다.

또한 생산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문약관에는 상기 외에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olicy와 Package Policy의 Section IV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고자 할 경우 사용한다.

PL보험료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첫째, 보험조건으로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등과 둘째, 담보생산물의 종류 및 매출액으로 결정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등 PL Claim 처리의 전문성으로 보험사 선정시 해당 제조물에 대한 PL보험 인수 경험 및 규모, 클레임 서비스의 경험, 평판 및 장기적인 재무건전성이 특히 중요하다.

## 제조물 책임법이란?

○ "제조물 책임법(PL법)"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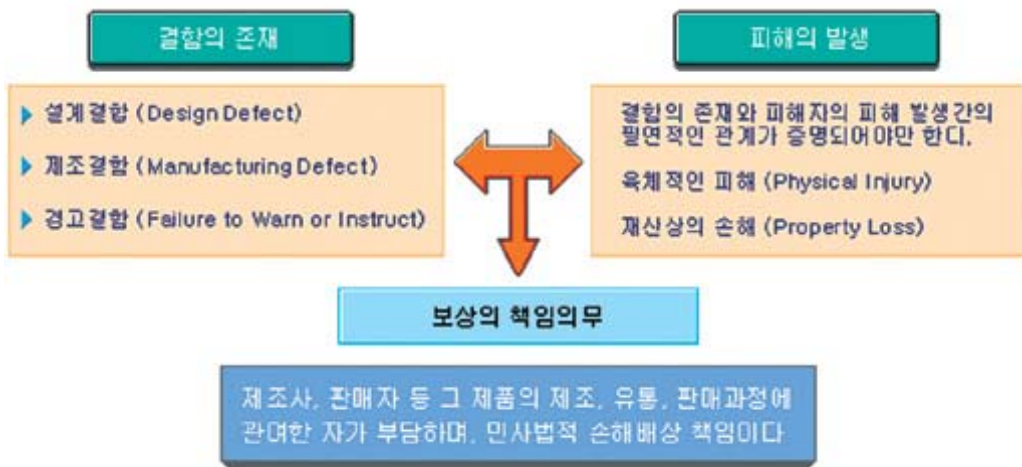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구분	민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보증책임)	-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 여부 -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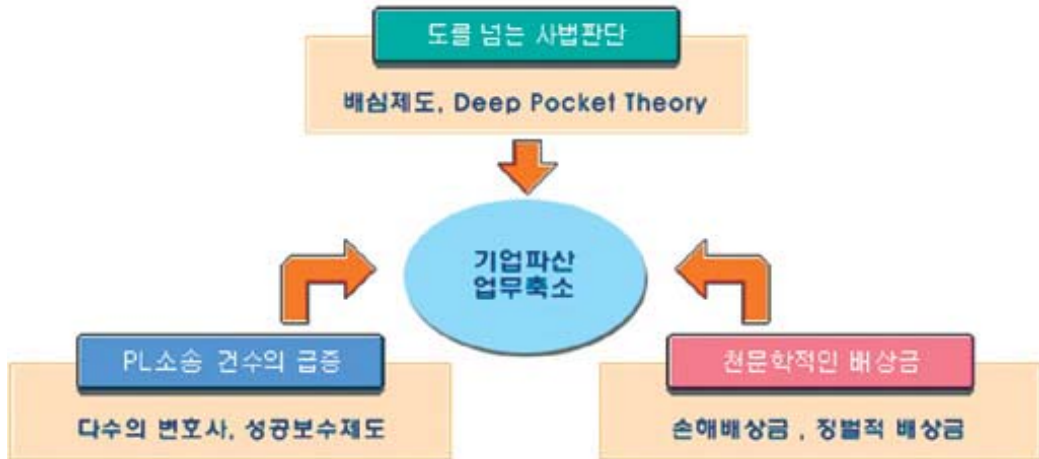
○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제조회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국가적, 사회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입증의 대상을 "결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위협적 요인은 무엇인가? (예시 : 미국)

"결함"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여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량적인 측면이 강해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매우 적어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PL소송은 승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업무적인 손실 등 소송제소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예시 : 미국의 관련설문 결과)

미국의 경우 전세계 PL법 중 가장 엄격한 경향을 지니고 있어, 미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PL소송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기업들 또한 회사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 이상인 존재의 문제로 PL대응을 인식해야한다.

- ▶ 설문내용 :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설문대상 : 미국에 있는 기업가들
- ▶ 1위 : PL(34.8%)
  - 주요사유 : 생산중지, 판매감소, 기업이미지 실추
- ▶ PL 관련비용 측면 (미 컨설팅법률사무소 분석)  
손해배상금, 보험료 등 기업의 PL관련비용이 년 3,500억불 초과 (미국 GNP의 7%)
- ▶ 조사결과 요약

- 1. PL (35%)
- 2. 파업 (25%)
- 3. 계약 (10%)
- 4. 타 배상책임 (6%)
- 5. 불공정 경쟁 (3%)
- 6. 주식 (2%)

